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0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8월 30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오기로 인해 잘못된 조항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2항에서 같은조제3항으로 옮기고,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중 현행 조례 제49조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각 호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(안 제12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1.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(이하 “분과위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한다.

안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 : 성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: 노동환경 개선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 :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(제안)안
<p>제7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·경제·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<u>공무원 7명</u>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<u>풍부한 자</u>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풍부한 사람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생략) ② 1항의 분과회의는 <u>성주류화 분과위원회, 정책개발 분과위원회,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</u>로 하고,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,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,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(제안)안
<p>1. <u>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2. <u>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분과위원장"이라 한다)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(이하 "분과위원"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<u>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 <p>1. <u>성주류화 분과위</u></p>	<p>----.</p> <p>1. <u>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 : 성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: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 :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(현행과 같음)</u></p>	<p>1. <u>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2. <u>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<삭제></u> <u>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③ <u>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1. <u>교육·문화 분과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(제안)안
<p><u>원회 : 성인지예산,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: 보육, 일자리, 안전,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: 조례의 제·개정, 정책,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<u>1.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</u></p> <p>2. 주요사업 계획수립</p>	<p><u>2.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3.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<u>1.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</u></p> <p>2. -----</p>	<p><u>위원회: 성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: 노동환경 개선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 :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.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2.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(제안)안
<p>과정에서의 자문 및 <u>협의</u></p> <p>3. <u>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, 환류 및 보고서 작성</u></p> <p>4. ~ 5. (생략)</p> <p>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2 및 <u>같은 법 제53조의2</u>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</p> <p>--<u>협의(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 다)</u></p> <p>3. -----</p> <p><u>평가 및 환류</u>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「<u>지방회계법</u>」 제18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	<p>수정(제안)안</p> <p>3.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<u>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공무원 7명”을 “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”으로 하고, “풍부한 자”를 “풍부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중 “성주류화 분과위원회, 정책개발 분과위원회,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”를 “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,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, 젠더폭력 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 : 성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: 노동환경 개선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 :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협의”를 “협의(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평가, 환류 및 보고서 작성”을 “평가 및 환류”로 한다.

1.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

제36조 중 “같은 법 제53조의2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· 경제 ·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<u>공무원 7명</u> 이내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<u>풍부한 자</u>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1항의 분과회의는 <u>성주류화 분과위원회, 정책개발 분과위원회,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</u>로 하고,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<u>성주류화 분과위원회</u> : 성인 지예산,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정책개발 분과위원회</u> : 보육,</p>	<p>제7조(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</u> ----- ----- ----- <u>풍부한 사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교육 · 문화 분과위원회, 노동 · 돌봄 분과위원회, 젠더폭력예방 · 안전 분과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교육 · 문화 분과위원회</u> : 성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노동 · 돌봄 분과위원회</u> : 노</p>

일자리, 안전,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3.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: 조례의 제·개정, 정책,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

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(생략)

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

2.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

3.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, 환류 및 보고서 작성

4. ~ 5. (생략)

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동환경 개선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3.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 :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

2. -----
-----협의(시장이 따로

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)

3. -----평가 및 환류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-----

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-----

